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 - 6호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들어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에너지 위기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등 세계 10위에 달할 만큼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함
- LED조명은 백열전구의 84%, 형광등에 비해 약 40%의 전력이 절감되는 친환경 조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민간부문에서는 도입이 부진한 실정임
-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처럼 24시간 조명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LED조명 보급을 촉진하는 시책을 도입하여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LED조명으로 정의함(안 제4조제19호 신설)

-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등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시설의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제9호)
-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민간시설에 대한 자금의 일부 보조 또는 용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 2. 7(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440-6233, 팩스 440-87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LED(발광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 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제2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동주택이나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등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 모가 많은 시설의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권장

제2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민간시설에 대한 자금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알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8. (생략) <u><신설></u>	제4조(용어의 정의) ----- ----- ----. 1. ~ 18. (현행과 같음) 19. <u>“LED(발광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u>
제21조(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시장은 건축물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의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8. (생략) <u><신설></u>	제21조(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공동주택이나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등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시설의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권장</u>
제22조(세제 및 재정지원 등) 시는 에너지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세제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제22조(세제 및 재정지원 등)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민간시설에 대한 자금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알선</u>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에 따른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개인소유물에 대한 저효율 전열기구(형광등, 백열등)등 소요파악이 불가
- 교체 대상자와 교체 사업자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이 이루어 지므로 이에 따른 비용예측은 불가

4. 작성자

경제수도추진본부 녹색에너지정책과장 박윤수